
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규정

2026. 2.

특허법원 · 지식재산처 · 한국지식재산보호원

목 차

I. 총 칙	1
II. 경연 준비	5
III. 법정 경연	8
IV. 평가 방법	12
V. 시상	14
VI. 보칙	15
[별지 1-1] 평가요소 배점 비율(본선)	16
[별지 1-2] 평가요소 배점 비율(결선)	16
[별지 1-3] 평가요소 배점 비율(서면심사)	17
[별지 2-1] 법정 내 경연 과정에서의 벌점 내역	17
[별지 2-2] 서면에 대한 벌점 내역	17

I. 총 칙

1.1. 통 칙

1.1.1. 목 적

- 본 규정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'로스쿨'이라 한다)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(이하 '대회'라 한다)에 적용할 사항을 마련함에 있다.

1.1.2. 대회 명칭

- 본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경연대회의 명칭은 “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(Korea IP Moot Court Competition)”로 한다.

1.1.3. 대회 주최·주관

- 대회는 특허법원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,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다.

1.1.4. 대회의 구성

- 대회는 서면심사(예선), 본선, 결선으로 구성한다.

1.1.5. 대회 개최 횟수

- 대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1.1.6. 대회 규정의 적용 및 해석

- 대회운영 시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,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거나 대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에 따라 대회 주최·주관기관이 결정한다.

1.2. 경 연

1.2.1. 경연 분야

- 경연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특허 분야 및 상표·디자인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1.2.2. 경연 방식

- 경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.
 - 예선 : 출제된 문제에 대해 양 당사자의 지위(원고, 피고)에서 지시사항에 따라 준비서면 등을 모두 제출하고, 각 팀이 제출한 서면을 예선심사부에서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 팀을 선정한다.
 - 본선 및 결선 : 본선 직전 추첨을 통해 변론할 당사자의 지위를 정하고, 그에 따라 법정에서의 구두 변론을 실시하며 구두 변론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결선을 진행한다.

1.2.3. 경연 문제

- 문제는 법률가로서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재판기록의 형태를 띠는 '기록형' 또는 사건개요를 설명하는 형태를 띠는 '사례형'으로 출제한다.
- 서면심사, 본선 및 결선 문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되, 일부 변형을 가하거나 추가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.
- 문제는 서면심사, 본선 및 결선의 각 단계에서 경연 팀에 동시에 제시한다.

1.3. 참가자

1.3.1. 참가자격 및 팀(team) 구성

- 대회에는 동일한 로스쿨 재학생(휴학생 포함) 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.
- 팀 구성원은 신청일부터 결선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없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, 주최기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.
- 팀이 구성 요건을 결여하였거나 결여하게 된 경우 그 팀의 대회 출전 자격은 상실된다.

1.3.2. 참가자의 공정성

-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경연에서 요구되는 법적·사실적 논증을 스스로 조사·연구하고 변론하여야 하며,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재학 로스쿨 교수 등으로부터 다음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 - 자료조사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
 - 서면작성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
 - 구술변론기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
- 참가자는 본선 및 결선 당일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일체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참가자는 대회기간 중 경연 심사를 위한 재판부에 재학 로스쿨, 인적사항 및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참가자는 신의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경연에 참가하여야 한다.

1.4. 재판부

1.4.1. 재판부의 구성

- 재판부는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하고, 그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한다.
- 재판부는 주최기관이 심사에 적합한 사람으로 선정한다.

1.4.2. 재판부의 독립성

- 재판부는 본 대회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변론 경연을 진행하고 평가한다.

1.4.3. 재판부의 공정성

- 심사 대상이 되는 참가자와 배우자·친족의 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는 심사관이 될 수 없다.

II. 경연 준비

2.1. 참가신청

2.1.1. 개최공고

-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홈페이지(ip-navi.or.kr/ipnavi/ipmoot)를 통해 대회 개최를 공고한다.

2.1.2. 신청

- 대회에 참가하려는 팀은 공고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때 참가신청의 내용에는 팀 구성원 중 팀을 대표하고 대외 연락업무를 담당할 팀장의 이름 및 휴대폰 전화번호(이하 “대표 연락처”라고 한다)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
2.1.3. 참가 팀에 대한 참가번호 부여

- 참가신청을 한 팀에게는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가 부여된다.

2.2. 서면 작성

2.2.1. 서면의 제출 형태

- 제출서면은 '흔글(hwp·hwpX)' 파일로만 작성하여야 한다.
- 파일명은 “개최연도-참가번호-경연부문(특/상)-당사자(①/②)” 순으로 한다.

(예시: 참가번호 1번 팀이 특허부문 원고측 준비서면 제출: 2000-001-특-①, 피고측 준비서면 제출: 2000-001-특-②)

2.2.2. 서면의 양식

- 문서 크기 : A4
- 사방 여백 : 위쪽 · 아래쪽 15mm, 오른쪽 · 왼쪽 20mm
- 머리말 · 꼬리말 : 20mm
- 우측 상단 머리말에 파일명 명기
- 우측 하단 꼬리말에 참가번호 명기
- 하단 중앙에 쪽 번호 명기
- 글자모양
 - 제목 : 글씨체 휴먼고딕, 글씨 크기 13, 자간 0, 장평 100, 굵게
 - 본문 : 글씨체 휴먼명조, 글씨 크기 12, 자간 0, 장평 100
- 문단모양 : 줄 간격 200%, 문단 위 · 아래 3pt
- 분량 : 서면의 분량 관련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.
- 법령, 판례 및 문헌 표기는 괄호로 처리한다.
- 서면에는 별도의 장으로 된 표지, 목차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서면에는 사진 · 도면을 활용할 수 있다.

2.2.3. 서면의 익명성

- 서면작성 시 명의는 참가번호로만 기재한다.
- 제출하는 모든 서면(변론자료 포함)에는 참가 팀의 로스쿨,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3. 예선

2.3.1. 서면의 제출

- 참가 팀은 참가신청절차 종료 후 경연대회를 위한 문제가 출제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그에 대한 원·피고측 준비서면 등 양 당사자의 지위에서 수행과제 서면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.
- 일방의 지위에서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- 서면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.
- 제출된 서면은 본선 및 결선 시 변론 경연 상대방에게 제공한다.

2.3.2. 예선의 심사

- 각 팀이 제출한 서면을 예선심사부에서 심사하여 본선 진출 팀을 선정한다.
- 서면심사 조 추천은 참가 신청이 완료된 후에 주관기관이 각 팀별 무작위로 추천하여 실시한다.
- 서면심사 결과 특허 부문은 상위 16개 팀 이내, 상표·디자인 부문은 상위 8개 팀 이내를 본선 진출 팀으로 선정한다.
- 주관기관은 본선 진출 팀이 확정되면 이를 대회 홈페이지에 공고함과 아울러 진출 팀에게 개별 통지한다.

Ⅲ. 법정 경연

3.1. 통 칙

3.1.1. 경연 장소, 방식 및 연락 방법

- 경연은 특허법원 내 법정에서 진행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 외에서 진행할 수 있다.
- 특허법원은 필요한 경우 본선 및 결선 경연을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, 본선 및 결선 경연 전에 본선 및 결선 경연 팀들에게 원격영상재판의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고지한다.
- 주관기관은 팀 대표 연락처를 통해 소집 일시·장소 등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3.1.2. 경연 시간

- 경연은 90분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경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3.1.3. 경연 방법

- 변론은 주 변론 → 재판부 질의·응답 →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한다.
- 주 변론은 팀당 최대 15분 이내로, 최종 변론은 팀당 최대 2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변론은 팀원 3명 중 2명이 나누어 변론하여야 한다.
- 최종 변론은 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인이 변론한다.

- 재판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2분의 범위 내에서 팀원 누구나 할 수 있다. 질의 및 답변 시간은 각 팀에 주어진 위 변론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구두변론 절차는 본 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.
- 참가 팀은 변론에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.
- 참가 팀은 주 변론 시 파워포인트(PowerPoint)를 이용하여 작성한 변론자료를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법정에 설치된 전자장비(실물화상기 등)를 사용할 수 있다.

3.1.4. 일방적 절차 진행

- 일방의 팀이 경연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10분을 기다린 후 참석한 팀에게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을 허가한다. 이 때 재판부는 출석한 팀을 평가함에 있어 출석하지 않은 팀이 출석하여 변론한 것으로 가정하되, 상대팀이 출석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한다.

3.1.5. 경연 장소에서의 의사소통

- 경연 팀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은 경연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경연 팀은 방청객 또는 제3자와 구두, 서면, 통신기기, 전자기기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.
- 구두변론 중에는 법정에 설치된 노트북 또는 원격영상재판 참여용 프로그램만이 구동 중인 컴퓨터 이외에는 인터넷, 휴대전화, PDA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.

3.1.6. 경연의 공개

- 경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대상 및 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.

3.1.7. 경연 장소에서의 질서 유지 등

- 경연 팀은 법정에서 재판부로 하여금 재학 로스쿨,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이름표, 옷, 책자, 파일, 언행 등의 징표를 드러내어서는 아니 된다. 이는 법정에 있는 방청인에게도 적용된다.
- 참가자, 방청인은 경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재판장은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3.1.8. 경연의 공정성 확보

-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팀에게 앞서 진행되는 경연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참가 팀의 동시 집합, 일정 장소에서의 대기 및 외부와의 연락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3.2. 본선 및 결선

3.2.1. 본선의 진행

- 본선의 대진표와 당사자 결정을 위한 추천은 특허법원 판사의 참석 하에 주관기관이 실시한다. 단, 동일한 로스쿨 팀끼리 경연하지 않도록 하거나 경연 부문 중복 참가신청을 한 팀의 경연 참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할 수 있다.

- 본선 진출 팀은 특허 부문 16개 팀, 상표·디자인 부문 8개 팀 이하로 편성하고, 4개 팀(원고 2개 팀, 피고 2개 팀)을 1조로 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한다.
- 구두변론 시 사용하는 변론자료는 해당 참가 팀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에 충실하게 작성하되,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.
- 2개 조별 1개의 재판부를 배정하고, 재판부는 2개 조 전체의 구두 변론 결과를 평가하여 특허 부문은 상위 4팀(원고 2팀, 피고 2팀)을, 상표·디자인 부문은 상위 2팀(원고 1팀, 피고 1팀)을 결선에 진출할 팀으로 선정한다.
- 본선의 경우, 상대 팀이 제출한 서면은 대진표 발표 직후 주관기관이 팀 대표에게 이메일로 보낸다. 결선의 경우, 결선 진출 팀이 결정된 직후 상대팀이 제출한 서면의 사본을 현장에서 교부한다.

3.2.2. 결선의 진행

- 결선에 진출한 부문별 상위팀에 대해 결선 구두변론을 진행하고, 그에 대한 평가점수 순으로 최종순위를 결정한다.
- 결선 진출 팀은 이미 사용한 변론자료를 수정하여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다.

IV. 평가 방법

4.1. 순위 결정 등

4.1.1. 법정 경연시 평가 항목

○ 법정경연은 아래 각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
1. 문제의 이해도 : 쟁점 파악 능력, 기술 이해도, 논리력 등
2. 변론자료 작성의 적정성 : 구성, 전달방법의 효율성, 명료성 등
3. 변론의 적정성 : 화술, 동작, 전달력, 팀워크, 독창성 등
4. 법정 태도의 적정성 : 예절, 법정 자세 등
5.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: 이해력, 정확도, 순발력 등
6. 일반교양 : 용어의 선택, 문화 및 역사 소양 등
7. 변론시간 제한 등 대회 규정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

4.1.2. 서면 평가시 평가 항목

○ 서면은 아래 각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
1. 쟁점 파악 능력
2. 구성의 적정성
3. 법률 소양, 기술 이해도
4. 논리력, 내용의 충실성
5. 서면 형식 등 절차준수의 적정성

4.1.3. 평가 방법

- 위 4.1.1.의 제1 내지 6과 위 4.1.2.의 제1 내지 4는 득점 방식으로, 위 4.1.1.의 제7과 위 4.1.2.의 제5는 감점 방식으로 각 평가한다.
- 경연 평가 항목 당 배점 비율은 본선은 [별지 1-1], 결선은 [별지 1-2]와 같고, 서면 평가 항목 당 배점 비율은 [별지 1-3]과 같다.

4.1.4. 팀 순위 결정

- 경연 팀 순위 결정은 재판부 3인이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각 부여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.
-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변론의 적정성,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, 변론자료 작성의 적정성, 문제의 이해도, 법정태도의 적정성 순 고득점 팀을 우위로 한다.

4.1.5. 평가의 비공개

- 경연 팀들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합의는 비밀로 한다. 누구든지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4.2. 벌점

4.2.1. 벌점의 부과

- 법정 내 경연 과정에서의 벌점 내역은 [별지 2-1]에 따르고, 재판장이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부과한다.
- 서면에 대한 벌점 내역은 [별지 2-2]에 따른다.

4.2.2. 벌점처리 방법

- 법정 내 경연에서의 벌점은 심사관별 각각 부여한 점수의 합계에서 재판부가 합의하여 각 항목당 1회 감점한다.
- 서면에 대한 벌점([별지 2-2]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)은 서면심사 시, 심사관별 점수에서 각각 감점한다.

V. 시상

5.1. 본선 및 결선 입상 등

- 입상자 시상은 경연 부문별 고득점 순으로 한다.
- 후원기관의 후원 여부에 따라 시상의 종류, 수 및 부상이 다르게 편성될 수 있다.
- 후원기관 대표자 상이 편성되는 경우, 각 후원기관이 마련한 독립 예산으로 부상을 하되, 각 후원기관에서 시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.
- 주최·주관기관은 상위 수상팀에게 차년도 대회설명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VI. 보칙

6.1. 대회를 위한 자료의 저작권 및 사용 용도의 제한

- 대회를 위해 주최·주관 측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 및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주최·주관 측에 있으며, 주최·주관 측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6.2. 경연 내용과 영상 및 서면의 귀속 · 공개

- 대회를 위해 제출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대회 참가팀에 있으며, 주최·주관 측은 필요시 제출된 저작물의 활용을 위해 참가자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.
- 주최·주관측은 대회에서 행하여진 경연 내용을 사진·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대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외부에 공개할 수 있으며, 필요시 해당 사항에 대해 참가자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.

6.3. 주최 · 주관 측에 대한 협력 의무

- 대회 참가팀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주최·주관 측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6.4. 주최 · 주관 측과 참가팀의 의사소통

- 대회 진행을 위한 공고, 통지, 문제 송부, 서면 제출 등의 의사소통은 본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.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팀이 부담한다.

[별지 1-1] 평가요소 배점 비율(본선)

구분	비율 (100%)	탁월 50	우수 40	보통 30	부족 20	미흡 10	환산점수
① 문제의 이해도	10%						
② 변론자료의 적정	20%						
③ 변론의 적정	40%						
④ 법정태도의 적정	5%						
⑤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	20%						
⑥ 일반교양	5%						
⑦ 절차 준수의 적정	감점제						

[별지 1-2] 평가요소 배점 비율(결선)

구분	비율 (100%)	탁월 50	우수 40	보통 30	부족 20	미흡 10	환산점수
① 문제의 이해도	10%						
② 변론자료의 적정	10%						
③ 변론의 적정	50%						
④ 법정태도의 적정	5%						
⑤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	20%						
⑥ 일반교양	5%						
⑦ 절차 준수의 적정	감점제						

[별지 1-3] 평가요소 배점 비율(서면심사)

구분	비율 (100%)	탁월 50점 이하 40점 초과	우수 40점 이하 30점 초과	보통 30점 이하 20점 초과	부족 20점 이하 10점 초과	미흡 10점 이하	환산 점수
① 쟁점파악 능력	30%						
② 구성의 적정성	30%						
③ 법률소양, 기술의 이해도	20%						
④ 논리력, 내용의 충실성	20%						
⑤ 서면 형식 등 규정 준수의 적정성	감점제						

[별지 2-1] 법정 내 경연 과정에서의 벌점 내역(심사관별로 합산하지 않고 재판부가 1회 부여)

순번	규정	위반내용	벌점
1	3.1.3.	변론시간 초과	1분에 5점
2	3.1.3.	변론순서·방법 위반	10점
3	3.1.7.	재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대한 불응	정도에 따라 5 ~ 10점
4	3.1.7.	법정에서의 익명성 조건 위반	횟수당 5점 단위로 15점까지
5	3.1.3.	변론자료 미활용	20점
6	3.1.4	지각 또는 불참	2분당 5점(10분 초과 탈락)

[별지 2-2] 서면에 대한 벌점 내역

순번	규정	위반내용	벌점
1	2.2.1. 2.2.2.	서면 형식 위반	1개당 5점 같은 항목으로 최고 15점
2	2.2.2.	분량 초과	초과된 분량에 따라 1장 이내 또는 1,080자(띄어쓰기 포함) 이내 당 10점
3	2.2.3.	익명성 조건 위반	횟수당 5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5점부터 15점까지
4	2.3.1.	제출 지연	당일 18시 이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최고 30점 감점(24시간 초과 시 서면 미제출 처리)
5	1.3.2.	외부의 부당 지원에 의한 작성	5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5점까지

* 벌점 내역 총 합계(최대 100점)의 5%를 서면심사 시 감점으로 반영(원·피고 각각 반영)